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황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406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대상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추가(황희의원안)	3

I. 개요

1. 황희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406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황희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8. 30.

(3) 회 부 일 : 2024. 9.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으나,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에 국한되어 있고 장교 및 부사관은 제외되어 있음.

한편 현역병 급여가 급격히 인상되었으나 병 대비 초급 간부의 급여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우수한 간부 인력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춘 간부 인력 확보가 군에 필수적이므로 초급 간부에 대한 재정 여건 개선 등 안정적 복무 지원 방안이 필요함.

이에 임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교 및 부사관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과세 혜택 기간도 장교 및

부서관 임기 등을 고려하여 36개월로 연장하여 재정적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대상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추가(황희의원안)

현 행	황희의원안
☐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제91조의19) -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전환복무자 - 세제혜택: 가입일부터 복무기간 종료일까지 납입한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 비과세 적용기간: <u>24개월</u>	☐ 가입대상 및 비과세 기간 확대 -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전환복무자, <u>장교, 준사관, 부사관</u> - 세제혜택: (현행과 같음) - 비과세 적용기간: <u>36개월</u>

* 황희의원안 2024. 8. 30. 제출(의안번호 3406)

☐ 개정안은 현행법상 현역병 등¹⁾으로 제한되어 있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 대상을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까지 확대하면서 장교 등의 임기를 고려하여 비과세 적용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임.

☐ 국방부는 지난 2018년부터 현역병 등이 복무기간 동안 목돈을 마련하여 전역 후에 원활한 사회 복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중은행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장병내일준비적금은 현역병 및 현역병과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등이 가입 가능한 상품

1) 현역병 및 현역병과 동일한 급여체계를 적용받는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및 전환복무자

으로²⁾, 가입기간은 복무기간 중 1개월~24개월이고, 개인별 월 적립한도는 40만원(2025년 1월 1일 이후는 월 55만원)이며, 2022년부터는 납입한 원리금의 연도별 매칭비율(2022년 33%, 2023년 71%, 2024년 100%)에 따른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제도 효과성 제고를 위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한 14%의 이자소득세³⁾⁴⁾를 비과세하고 있음.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
가입기간	1개월 이상 ~ 24개월 이하 (군 복무기간으로 한정)
협약은행	14개 은행(우정사업본부,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금리	5% 수준
적립한도	개인당 월 40만원(은행별 월 20만원)
매칭지원	2022년 1월부터 납입한 원리금의 연도별 매칭지원금 추가 지원 (2022년 33%, 2023년 71%, 2024년 100%)
세제혜택	이자소득 비과세

자료: 국방부

2) 「병역법」

제79조의2(적금의 정부지원) ① 국가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및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에 따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제62조(이자소득 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 (본문 생략)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이자소득등에 대하여 제12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라. 그 밖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

4) 다만, 이 경우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됨.

□ 한편, 현역병의 봉급은 최근에 크게 증가하였으나 군 간부의 급여 인상은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져 간부와 병사간 급여 차이가 감소하였고, 현역병이 받는 급여는 전액 비과세 대상인 반면, 초급간부의 봉급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병장과 하사 간 봉급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임.

[연도별 군인 봉급 현황]

(단위: 원)

연도	2014년	2015년	2018년	2021년	2023년	2024년
소위	1,130,500	1,184,800	1,624,400	1,727,400	1,785,300	1,892,400
준위	1,493,100	1,564,800	2,118,600	2,253,000	2,328,500	2,386,700
하사	970,700	1,017,300	1,458,800	1,678,100	1,770,800	1,877,000
병장	149,000	171,400	405,700	608,500	1,000,000	1,250,000
상병	134,600	154,800	366,200	549,200	800,000	1,000,000
일병	121,700	140,000	331,300	496,900	680,000	800,000
이병	112,500	129,400	306,100	459,100	600,000	640,000

자료: 「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별표13

□ 이에 개정안은 임용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교 및 부사관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비과세 적용기간을 간부의 임기를 고려하여 36개월로 연장하려는 것으로, 초급간부의 재산형성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복무를 지원하고 우수한 간부인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001년 대비 2022년의 현역병 및 장교의 급여를 비교해보면 초급간부의 보수 인상률은 3.1배~3.5배로, 현역병의 인상률 34.0배에

비해 현저히 적은 비율로 증가하였음.

이는 최저임금의 인상률인 4.9배보다도 적은 증가율로서 2015년 이후 초급간부의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된 바 있음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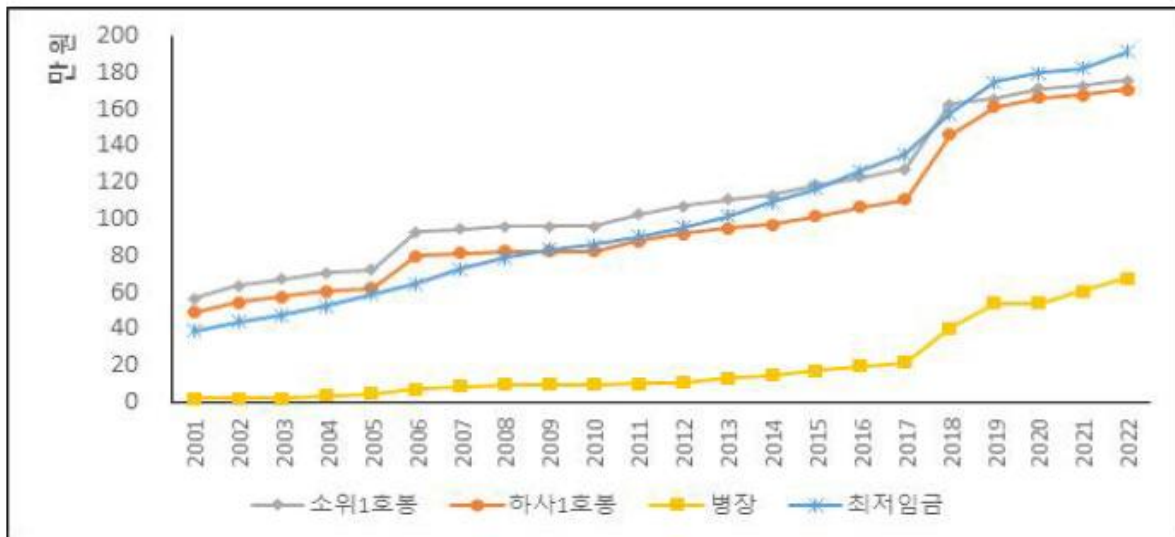
[2001년 대비 2022년 현역병·장병 급여 및 최저임금 인상률]

구 분	2001년(A)	2022년(B)	배수(A/B)
장 교	57만원	176만원	3.1배
부사관	49만원	171만원	3.5배
병장(兵)	2만원	68만원	34.0배
최저임금	39만원	191만원	4.9배

* 간부 급여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수치

자료 : 「병 급여 인상이 초급간부 지원 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 연구센터, 2022.12.20.

[소위·하사·병장 및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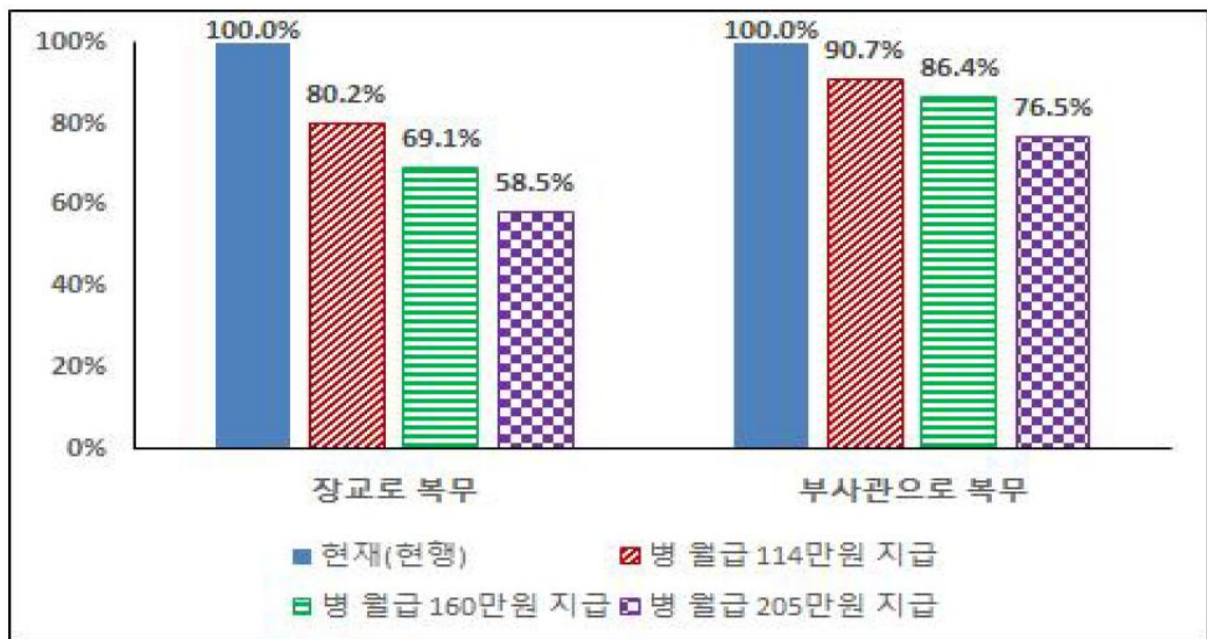


자료 : 「병 급여 인상이 초급간부 지원 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 연구센터, 2022.12.20.

5) 「병 급여 인상이 초급간부 지원 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 2022.12.20.

또한, 병 급여 인상으로 군 간부와의 상대적으로 급여수준 격차가 감소할 때 장교·부사관 등 군 간부로의 지원 의사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연구결과⁶⁾ 등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초급간부의 지원을 제고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병 급여 인상 시, 군 간부 지원 의사 변화]



자료: 「병 급여 인상이 초급간부 지원 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 연구센터, 2022.12.20.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가입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예산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2,190억 900만원, 2023년 6,584억 2,100만원, 2024년 1조 191억 900

6) 「병 급여 인상이 초급간부 지원 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인력연구센터, 2022.12.20.

만원이 편성되었고, 2025년 예산안⁷⁾에는 1조 3,276억원 6,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음.

2023년 「병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은행이자에 추가로 1%p의 국가지원이자를 지급하고 원리금의 71% 수준의 매칭지원금을 지원하던 것을 2024년 납입금액부터 추가금리에 대한 지원은 중지하되 매칭지원금을 원리금의 100% 수준으로 확대함으로써 현역병이 더 큰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였고, 이로 인하여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하였음.

[장병내일준비적금 제도 변경 내용]

육군 복무기간 18개월 / 월 40만원 납입 기준			
• '23년 12월까지 납입금액			
- 원금 : 720만원 - 은행이자(5%) : 28.5만원 - 국가지원이자(1%) : 5.7만원	만기 시 754.2만원	매칭지원금 약 535.5만원 (원리금의 71%)	약 1,289만원 자산형성
• '24년 납입금액 부터			
- 원금 : 720만원 - 은행이자(5%) : 28.5만원	만기 시 748.5만원	매칭지원금 720만원 (원금의 100%)	약 1,468.5만원 자산형성

자료: 국방부

또한, 정부가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0.9억원, 2021년 기준 0.4억원, 2022년 2억원의 조세지출이 있었으며, 2023년에는 20억원으로 증가하였고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92억, 101억원의 조세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7) 정부 편성한 기준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제도의 조세지출 현황]

(단위: 억 원)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0.9	0.4	2.0	20	92	101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및 비과세 제도 운영에 따른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을 간부까지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둘째, 군 간부 지원을 제고를 위해 국방부가 다양한 처우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국방부는 초급간부 지원을 제고 및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단기복무간부 장려금 및 수당 인상⁸⁾, 초급간부 수당 인상 및 수당체계 개편 등을 통해 초급간부에 대한 보수수준을 중견기업 수준에 준하도록 상향조정하고, 간부숙소 1인 1실화·국민평형 관사 확대 및 시설개선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⁹⁾에 있음.

2025년 정부 예산안 기준 군인 가족과 초급간부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2024년 5,260억원이던 예산이 7,863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이중 6,048억원이 초급간부를 위한 노후 간부숙소 개선과 ‘1인 1실’ 확보 예산에 해당함.

8) * 단기복무장교 장려금 : ('22년) 600만원 → ('23년) 900만원 → ('24년) 1,200만원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 ('22년) 500만원 → ('23년) 750만원 → ('24년) 1,000만원

9) “정예 선진 강군” 육성의 기반을 조성하는 「'23~'27 군인복지기본계획」 확정, 국방부 보도자료, 2023. 12. 10.

셋째,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고금리 및 비과세 혜택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본업을 중지하고 징집된 현역병 등에게 전역 후 학업 복귀나 취업·창업 등의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자발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본인의 직업으로 군인을 선택한 간부에게 적용하기에는 과도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음.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서는 높은 기본금리 외에 원리금 매칭지원 및 이자소득 비과세까지 3중의 혜택이 부여됨.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기본금리 자체가 일반적금에 비해 높게 설정되어 있어 가입자는 비과세 혜택이 없이도 시중은행 적금금리보다 높은 수준의 이자율을 적용받고, 이에 더해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비과세되는 경우 약 0.7%p¹⁰⁾의 추가적인 수익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 비과세만 적용되는 장애인·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경우에 비해¹¹⁾ 이자소득이 더 많을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 이외에도 원리금 매칭에 따른 재정지원(2022년

10) $5\% \times 14\% = 0.7\%$ (지방개인소득세는 미고려)

1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 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65세 이상인 거주자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傷痍者)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33%, 2023년 71%, 2024년 100%)도 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군 간부의 가입을 허용하여 해당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넷째, 간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먼저 개정안은 가입대상에 준사관을 포함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준사관은 임용 이후 2년 이상이 경과한 부사관이 지원하여 임관한다는 점과 국방부는 준사관을 초급간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준사관을 가입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은 3년인 반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4년이므로 비과세 적용기간을 차등하여 규정할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종합해보면, 초급간부의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급여체계의 개편이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본 개정안은 임용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장교 또는 부사관도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3441)」의 의결을 전제로 함.

문 의 처
02)6788-5154